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-117호

「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 지급・운영에 관한 규정」

일부개정 2022.11.22.,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-117호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해 기능전수와 계승을 장려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·운영 및 세부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"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"(이하 "전수장려금"이라 한다) 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 제23조에 따라 선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지원 자금을 말한다.
- 제3조(전수장려금 지급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수장려금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각 개인에게 지급한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수장려금을 지급하되, 전수교육 계획 및 실적, 기능공개·체험행사 등 활동실적 에 따라 전수장려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.
 - 1. 전수장려금은 대한민국식품명인과 전수교육 등을 분기별 6회이상 실시한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.

- 2.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관 또는 참여하는 대외 기능공개 활동 및 공연, 체험행사 참여 또는 실시한 횟수에 따라 전수장려금을 우대 지급할 수 있다.
- ③ 전수장려금 지급단가 및 차등지급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.
- 제4조(전수장려금 지급시기 등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수장려금을 매 분기 다음달(4분기는 12월) 25일에 지급하되, 공휴일 등 상황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- 제5조(전수장려금 지급신청) ① 전수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한 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'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 등 전수활동 계획서'를 매년 1월 20일까지 작성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매 분기 다음달(4분기는 12월) 10일까지 「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전수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
 - ③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전수장려금 지급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'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 등 전수활동 실적 보고서'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
 - ④ 전수장려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 등은 (사)대한민국식품 명인협회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.
- 제6조(전수장려금의 지급제한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 명인 전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1.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승지원금을

받고 있는 경우

- 2. 「숙련기술장려법」에 따른 전수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활동실태를 조사하여 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14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전수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7조(재검토기한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 <제2022-117호, 2022. 11. 22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전수장려금 지급단가 및 차등지급 등 기준(제3조 관련)

분기별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실적반영기간	1~3월	4~6월	7~9월	1~12월
예산 집행액 비율	20%	20%	20%	40%

※ 예시) 예산이 30천만원인 경우, 1~3분기 각 6천만원, 4분기 12천만원 지급

등급별	S	A	В	С
지급금액	지급단가 120%	지급단가 110%	지급단가 100%	지급단가 80%
지급대상자 비율	10%	20%	50%	20%

- ※ 지급단가는 분기별 예산 집행액을 해당 분기 지급대상자수로 나눈 금액(백 원 단위 반올림)
- * 실적에 따라 등급별 지급대상자수가 초과 또는 미달될 경우 생년월일이 늦은 사람을 상위등급으로, 생년 월일이 빠른 사람을 하위등급으로 조정(연소자 우대)
- ※ 등급별 지급대상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합계가 전체 지급대상자수 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반올림한 가장 낮은 등급부터 1명씩 조정
- * 조정된 등급별 지급대상자수에 따라 총 지급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 S등급에서 일괄 감액조정

[별지 제1호서식]

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 등 전수활동 계획서

대한민국식품명인		제 호 (지정품목 또는 기능)	(성 명)	(서명 또는 인)
전 수 자		제 – 호	(성 명)	(서명 또는 인)
	1월			
	2월			
	3월			
	4월			
	5월			
전수 교육	6월			
세부 계획	7월			
	8월			
	9월			
	10월			
	11월			
	12월			

년도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등 전수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[별지 제2호서식]

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 등 전수활동 실적 보고서

< 년 월 일>

대한민국 식품명인	제	호 (지정품목 또는 기능)	(성 명)	(서명 또는 인)
전 수 자	제	- 호	(성 명)	(서명 또는 인)

전수교육등전수활동	계	획	ex) 1. 누룩만들기 이론 교육(월) 2. 누룩만들기 실습 과정 교육 3. 누룩띄우기 실습	
	실	적	ex) 1. 누룩만들기 명인으로부터 2시간 이론, 2시간 실습 교육 이수 가. 누룩만들기 이론 교육 내용(시 분 ~ 시 분) - (내 용) 나. 누룩띄우기 실습 교육 내용(시 분 ~ 시 분) - (내 용)	
기능공개ㆍ공연ㆍ체험행사	계	획	ex) 1. ○○행사 기능공개 시연 2. 지역축제행사 식품명인 체험부스 운영	
	실	적	ex) 1. ○○행사 기능공개 시연 - (내 용) 2. 지역축제행사 식품명인 체험행사 실시 - (내 용)	
	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			

(증빙자료)

전 수 교 육 등 전 수 활 동	월 일. 누룩만들기 이론교육	월 일. 누룩만들기 실습 교육	
	사진(동영상)	사진(동영상)	
능 전	월 일. 누룩띄우기 실습교육 1	월 일. 누룩띄우기 실습교육 2	
그 수 활 년	사진(동영상)	사진(동영상)	
기능공개・공연・체험행사	월 일~ 일. 한가위명절선물상품전 기능공개 모습	월 일~ 일. ○○지역축제행사 명인체험 진행 모습	
	사진(동영상)	사진(동영상)	

- ※ 증빙서류 : 행사 참여 공문, 문서, 사진·동영상 제출
 - 모든 사진(동영상)자료는 촬영일자 확인이 가능해야하고 실적날짜와 일치해야함(확인된 일자별로 실적은 1회만 인정) 사진(동영상)자료가 없는 실적은 불인정